

• 21세기 미래문화도시 • 더불어 행복도시 • 사람중심 열린도시



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292호 2022. 1. 17.(월)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54호(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1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69호(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(2차, 주거이전비 등)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) 8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71호(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) 12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월 11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자치법규명

-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' 22.1.13. 시행)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,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(안 제1조)
-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. 1. 14.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사항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(☎749-70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마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
- 연 락 처 : 전화 749-7082, FAX 749-7079
- E- mail : toyhy84@korea.kr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
바. 첨부

-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관련법령 발췌

[붙임]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의”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 중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6조)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(직무) ① <u>의회의</u>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 ② (생략)	제2조(직무) ① <u>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5조(정책지원관) ① <u>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u> ② <u>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u> 1. <u>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u>

	<u>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u> <u>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 <u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 <u>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 <u>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
<u>제5조(직원의 정원)</u>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<u>인천광역시연수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</u>로 정한다.	<u>제6조(직원의 정원)</u> ----- -----<u>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</u>-----.
<u>제6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</u>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7조(시행규칙)</u> ----- <u>필요</u>----- -----.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] [2021. 1. 12. 전부개정]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[시행 2022. 1. 13.] [2021. 12. 16. 전부개정]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시행 2022. 1. 13.] [2021. 12. 16. 일부개정]

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(2차, 주거이전비 등)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1-33호(2011.9.19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9-156호(2019.12.9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간접보상비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월 13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사 업 명 :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 업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-17번지 일원
3. 사업 시행자 :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4. 서류의 종류 및 명칭 : 별첨 「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」 참조
5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2. 1. 13. ~ 1. 27. (14일 이상)
6. 열람장소 및 방법 :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또는 전화(☎749-8602)
7. 열람서류 : 별첨 「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」 참조
8. 기 타 :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도시주택과(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조 서

수용지장물의표시					소유자		관계인		
번호	소재지	지번	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	수량 면적(㎡)	성명	주소	성명	권리의종류	주소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15	이주정착금 —	1식	강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-21 (옥련동)			
2	"	"	주거이전비 1인	1식	"	"			
3	"	"	이사비 —	1식	"	"			
4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0-13 101호	이주정착금 —	1식	고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0-13 지산주택 101호			
5	"	"	주거이전비 2인	1식	"	"			
6	"	"	이사비 —	1식	"	"			
7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9	이주정착금 미해당	1식	권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8 (옥련동)	삼성카드 주식회사 (인천콜렉션)	가압류 (2109카단 278)	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(태평로2가)
7	"	"	" "	"	"	"	인천수산업 협동조합 (송도지점)	근저당권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-5
7	"	"	" "	"	"	"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가압류 (2019카단 809)	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(다동)
8	"	"	주거이전비 미해당	1식	"	"	삼성카드 주식회사 (인천콜렉션)	가압류 (2109카단 278)	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(태평로2가)
8	"	"	" "	"	"	"	인천수산업 협동조합 (송도지점)	근저당권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-5
8	"	"	" "	"	"	"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가압류 (2019카단 809)	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(다동)
9	"	"	이사비 미해당	1식	"	"	삼성카드 주식회사 (인천콜렉션)	가압류 (2109카단 278)	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(태평로2가)
9	"	"	" "	"	"	"	인천수산업 협동조합 (송도지점)	근저당권	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7-5
9	"	"	" "	"	"	- 9 -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가압류 (2019카단 809)	서울 중구 청계천로 24 (다동)

10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86-3 제비동 제지 하층 제4호	이주정착금 미해당	1식	김**	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97번길 42-4 비동 비04호(옥련동, 대진빌라)			
11	"	"	주거이전비 미해당	1식	"	"			
12	"	"	이사비 —	1식	"	"			
13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0-5	이주정착금 —	1식	박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0-5			
14	"	"	주거이전비 1인	1식	"	"			
15	"	"	이사비 —	1식	"	"			
16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0-10	이주정착금 —	1식	유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-13 (옥련동)	한국주택 금융공사	근저당권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
17	"	"	주거이전비 1인	1식	"	"			
18	"	"	이사비 —	1식	"	"			
19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16	이주정착금 —	1식	윤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-16	남인천농업 협동조합 (본소)	근저당권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34-1
20	"	"	주거이전비 1인	1식	"	"	"		"
21	"	"	이사비 —	1식	"	"	"		"
22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5	이주정착금 —	1식	이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-5			
23	"	"	주거이전비 1인	1식	"	"			
24	"	"	이사비 —	1식	"	"			
25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17	이주정착금 —	1식	주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-35 (옥련동)	인천광역시 연수구 2317	압류 (교통행정과 56335)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-5
25	"	"	" "	"	"	"	주식회사 국민은행 (옥련동지점)	근저당권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(을지로2가)

26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17	주거이전비 2인	1식	주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-35 (옥련동)	인천광역시 연수구 2317	압류 (교통행정과 56335)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-5
26	"	"	" "	"	"	"	주식회사 국민은행 (옥련동지점)	근저당권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(을지로2가)
27	"	"	이사비 —	1식	"	"	인천광역시 연수구 2317	압류 (교통행정과 56335)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-5
27	"	"	" "	"	"	"	주식회사 국민은행 (옥련동지점)	근저당권	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(을지로2가)
28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	271-3 271-20 401호	이주정착금 —	1식	최**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242번길 10-14 401호 (옥련동, 송도빌리지)	중소기업은행 (상동역지점)	근저당권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
29	"	"	주거이전비 2인	1식	"	"	"	"	"
30	"	"	이사비 —	1식	"	"	"	"	"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2년 1월 17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고
○ 복사용지(A4) : 70원 ○ 라벨용지(A4) : 220원	○ CD : (450원xCD개수)+(25원x면수)	